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-255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충남도청(내포) RM-13BL)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920호(2012.1.3)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(내포) RM-13BL 공공주택(국민임대)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5월 25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충남도청(내포) RM-13BL 공공주택(국민임대) 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개요

구분	내 용	비고
가. 대지위치	충남 홍성군 홍북면, 예산군 삼교읍 일원 충남도청(내포)신도시 내 RM-13BL	
나. 사업면적(m ²)	66,555.00	
다. 대지면적(m ²)	66,555.00	
라. 연면적(m ²)	96,821.28	
마. 규모	아파트 8개동(국민임대 1,224세대, 15~18층) 및 부대복리시설	
바. 구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

4. 사 업 비 : 109,890,241천원 (국민주택기금 48,303,280천원)

5. 사업기간 : 2011.12.~ 2024.11

6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(토지이용계획 변경)